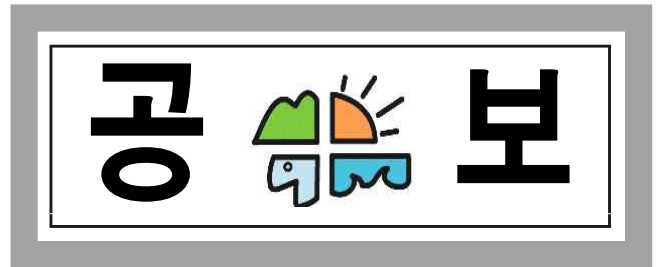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856호 2014년 5월 8일(목)

조 례

○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훈 령

○ 속초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대책 협의회 운영규정..... 7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8일

속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함 재 석 인

속초시 조례 제 2365호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여가 활동촉진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속초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나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5.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사업) 속초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설) 체육센터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2.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관리실 등

제5조(체육센터의 개방 및 이용)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육센터의 개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

④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2. 설연휴 및 추석연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히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기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등
- ② 제1항의 각 호마다 2명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9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입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센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공중에 위대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3. 음주자 등 체육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센터 시설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②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면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에 한정하여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 시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

제14조(손해배상) ①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진행 중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보험가입) 시장은 체육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센터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속초국민체육센터 사용료(제11조 관련)

□ 1일 및 1개월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대 상	사 용 료		비 고
		1일	1개월	
수영장	성 인	3,500	60,000	※ 기타 할인 1. 30명 이상 단체 : 20% 할인 2. 수영장을 사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은 월사용료의 10% 할인
	청소년·군인	2,500	45,000	
	어린이, 경로대상자	2,000	40,000	
헬스장	성 인	3,000	40,000	
	청소년·군인	2,500	30,000	
	어린이, 경로대상자	2,000	25,000	
에어로빅장	성 인	3,000	40,000	
	청소년·군인	2,500	30,000	
	어린이, 경로대상자	2,000	25,000	

※ 1개월 초과 사용자의 할인율

구 분		할인율	비 고
장기등록 할인	3 개월	5%	
	6 개월	10%	
	12개월	15%	
2종목 이상 등록 시		각 종목별 10%	

속초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대책 협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속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함재식 (직인)

2014. 05. 08.

속초시 훈령 제658호

속초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대책 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속초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하수처리장”이라 함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견청취)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1. 하수처리장 및 주변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하며, 협의회장 유고 시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부

서장(환경보호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과 관할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민간인 7명 이내로 하수처리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지역주민으로 관련부서장과 관할동장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협의회 위촉직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이사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자격을 상실하며,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 위원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운영)

- ① 협의회 회의는 연 2회(반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3조제1호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은 행정지원 등 악취저감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민·관 합동점검) 하수처리장 및 주변지역 악취발생 시설물에 대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악취 모니터링단 운영) ① 제4조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하수처리장 인근지역 악취 원인분석을 위한 악취 모니터링단에 소속되

며, 연중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며 필요할 경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된 악취모니터링 조사서는 협의회 회의 개최 시 제출하며, 악취 모니터링단에서 제출된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서장은 악취저감을 위하여 시설물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수당 지급) 악취발생 시설물 지도·점검에 참여한 민간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악취 발생 조사서

○ 성 명 :

○ 악취모니터 장소 :

일시	악취 발생시간	악취도						악취종류	날씨	비고
		0도	1도	2도	3도	4도	5도			

관능법으로 악취 강도를 구분하는 기준

○ 악취 판정도

악취도	악취강도구분	설 명
0	무취	상대적인 무취로 평상시 후각으로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
1	감지취기	무슨 냄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2	보통취기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강한취기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냄새를 말하며 예를 들어 병원에서 특유의 크레졸 냄새를 맡는 정도의 상태
4	극심한 취기	아주강한 냄새, 예를 들어 여름철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는 심한 정도의 냄새
5	참기 어려운 취기	견디기 어려운 강렬한 냄새로서 호흡이 정지될 것 같이 느껴지는 정도의 상태